

1년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내용과 시행

I. 서설

2021.12.16. 고용노동부는 20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 연차휴가」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발표한바 이하에서는 2021.12.16.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기존 고용노동부 해석 vs 변경된 고용노동부 해석 비교

구분	기존 고용노동부 해석 ¹⁾	변경된 고용노동부 해석
요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 데 만약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음.

III. 2021.12.16.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요 내용

- 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

1) 고용노동부(2021.04.14.) 「만 1년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검토」 등

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동 법 제60조 제2항(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②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동 법 제60조 제1항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 동 법 제60조 제2항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 후 퇴직하면 발생하지 않아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의 연차휴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IV.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주요 쟁점 및 사례

1.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 경우 발생 연차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연차 최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 모두 발생하는바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최대 26일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예) 2021.01.0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2.01.01.(366일째)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대 26일(11일 + 15일)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 모두(최대 26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2. 만 7개월 근로(ex. 1.1. ~ 7.31.) 후 퇴직한 경우 발생 연차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7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8.1.)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최대 6일 연차만 발생함.

예) 2021.04.01. 입사한 근로자가 만 3개월(4.1. ~ 6.30.)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 연차는 3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7.1.에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최대 2일 연차만 발생함.

3. 만 3년 근로(ex. 2021.1.1. ~ 2023.12.31.)하고 퇴직한 경우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 및 가산휴가 발생여부.

만 3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 해 다음날(2024.1.1.)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와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음.

예) 2021.01.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12.31.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2023년도에 80% 이상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산휴가 16일은 발생하지 않음.

V. 변경 행정해석 시행일자 :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

별첨 : 변경된 연차유급휴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발표자료 1부. 끝.

2021. 12. 17.

노무법인 두레 (職印省略)